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며,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관 보호에

관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굴착공사 원콜시스템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9호)

- 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 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1항)
- 다.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굴착공사 원콜센터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3항)
- 라.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0조의3제4항)
- 마. 굴착공사 원콜센터 운영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부담토록 함(안 제44조제3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이라 함은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공사를 하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하여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굴착공사에 관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굴착공사 원콜센터”라 함은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u></p>
<p>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p> <p>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u>고압가스안</u></p>	<p>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u>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공사-----.</p>
<p>제30조의3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p> <p>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u>지역에 있는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동주택 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에서</u>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u>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44조(수수료등)</p> <p>①·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30조의3(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p> <p>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u>지역에서</u>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u>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워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굴착공사 워크센터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굴착공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받으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가스배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4조(수수료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굴착공사 워크센터가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굴착공사 워크센터로부터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 (생략)</p> <p>7.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u>가스배관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u></p> <p>8. ~ 13. (생략)</p> <p>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생략)</p> <p>6. 제30조의3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u>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u></p> <p><u>〈신설〉</u></p> <p>7.~ 9. (생략)</p>	<p>제50조(벌칙)-----.</p> <p>1.~ 6. (현행과 같음)</p> <p>7.-----</p> <p>-----<u>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u></p> <p>8. ~ 13. (현행과 같음)</p> <p>제51조 (벌칙)-----.</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p> <p>6의2.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p> <p>7.~ 9. (현행과 같음)</p>



영어  
유머

### Underconsumption – 과소비

Hubby: “I’ve paid our last bill. We’re finally out of debt.”

Wife: “Oh, goodness! Now I can get credit again!”

남편: “마지막 계산이 끝났으니 겨우 빚에서 벗어났군.”

아내: “어머나, 그래요. 그럼 다시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